

수원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18가단3287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1. A

소송대리인 B

2.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1. 12. 15.

판 결 선 고 2022. 1. 12.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주위적으로 2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6. 5.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30.부터 각 위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며, 예비적으로 위 각 돈의 2/7를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부부인 원고들은 1995년부터 목재옷걸이 제조도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 'D'을 함께 운영하였다.
- E는 1998. 9.경 D에 입사하여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 원고들은 1998. 11. 12.경 F을 단독 사업자로 하여 'D'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E는 2004. 1.경 원고 A과 D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작성하고, 2004. 1. 19.경 원고 A과 함께 공동사업자로서 D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E는 아들인 피고 명의로 2006. 1. 2.경 원고 A과 D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작성하였고, 2007. 1. 17. 피고와 원고 A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D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E는 2008. 6. 30. D에서 퇴직하였는데, 그 당시 D의 2008. 6. (수입/지출)월보(이하 '이 사건 월보'라고 한다)에는 2008. 6. 30. 기준 차입금(사채)이 1억 7,850만 원, 차입금(은행)이 1억 4,900만 원이어서 차입금 총액이 3억 2,7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원고 A은 2008. 7. 3. D의 단독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위와 같이 E와 피고가 더 이상 D의 영업에 관여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에도 착오로, 주식회사 G는 2008. 8. 14. D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되었던 피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D에 대한 물품대금 1,200만 원(이하 '제1지급금'이라고 한다)을 이체하였는데, 원고 A은 주식회사 G로부터 제1지급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 주식회사 G는 2008. 12. 31.경 주식회사 H에 흡수합병되었다.
- 주식회사 H는 2009. 6. 5. D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되던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D에 대한 물품대금 500만 원(이하 '제2지급금'이라고 한다)을 이체하였고, 주식회사 I는 2009. 9. 30. 위 국민은행 계좌로 D에 대한 물품대금 1,500만 원(이하 '제3지급금'이라고 한다)을 이체하였다.

- E는 2010. 2. 25.경 원고들에게 ‘1998. 8.경 D에 투자한 5,000만 원으로 제1, 2, 3지급금을 상계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7호증)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우편물이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 주식회사 H가 2009. 11. 25. E를 상대로 제2지급금 500만 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서울북부지방법원 2009차10522호)하였다가 소송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소45747호)로 회부된 후 2010. 6. 1. 위 소를 취하하였고, 주식회사 I가 2010. 4. 1. E를 상대로 제3지급금 1,500만 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소45730호)를 제기하였다가 2010. 5. 31. 위 소를 취하하였다.
- 원고 A은 2010. 11. 15.경 D을 폐업하였다.
- E가 2013. 9. 10.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을 배우자인 J 3/7, 자녀인 피고, K이 각 2/7씩 공동상속 하였다.
- 원고 A은 2018. 6. 27. 피고에게 제1, 2, 3지급금 합계 3,2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최고하는 내용의 최고장(갑7호증)을 발송하였고, 2018. 7. 2. 위 최고장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13, 22, 31, 32, 34호증, 을2, 5, 7, 8, 52, 53, 5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A의 주장

- 제1, 2, 3지급금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고, 원고 A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 A은 주위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제1, 2, 3지급금 합계 3,2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제2, 3지급금의 경우 부당이득을 얻은 자가 피고가 아니라 E라고 본다면, E의 상속인인 피고는 제2, 3지급금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바, 원고 A은 제2, 3지급금과 관련하여 예비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제2, 3지급금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2/7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8. 8. 14. 제1지급금 1,2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1,2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D의 사업자인 원고 A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고, E는 2009. 6. 5. 제2지급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2009. 9. 30. 제3지급금 1,5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각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D의 사업자인 원고 A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제1지급금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0. 2.

25.부터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제2지급금 중 E에 대한 상속분 해당 금액인 1,428,571원(= 500만 원×2/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제3지급금 중 E에 대한 상속분 해당 금액인 4,285,714원(= 1,500만 원×2/7)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0. 2. 25.부터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 A은 피고가 제2, 3지급금 전액에 관하여 E와 공동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 3지급금은 피고가 아니라 E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달리 피고가 직접 제2, 3지급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2, 3지급금에 관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 A은, 제1지급금에 관한 부당이득금 1,200만 원에 대하여 제1지급금 지급일인 2008. 8. 14.부터의, 제2지급금에 관한 부당이득금 1,428,571원에 대하여 제2지급금 지급일인 2009. 6. 5.부터의, 제3지급금에 관한 부당이득금 4,285,714원에 대하여 제3지급금 지급일인 2009. 9. 30.부터의 각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부당이득반환과 관련하여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민법 제748조),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는바(민법 제749조 제1항), E가 원고들에게 '1998. 8.경 D에 투자한 5,000만 원으로 제1, 2, 3지급금을 상계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우편물이 원고들에게 도달한 2010. 2. 25.에는 피고와 E가 자신들에게 제1, 2, 3지급금을 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달리 위 2010. 2. 25. 전에 피고와 E가 제1, 2, 3지급금을 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원고 A의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 A의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모두 ‘착오 송금’에 따라 발생한 것이어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시효소멸 항변은 이유 없다.

○ 피고는, 제1지급금에 관한 원고 A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발생일인 2008. 8. 14.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 12. 18.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 A이 제1지급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한 2008. 8. 14.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8. 6. 27. 피고에게 제1, 2, 3지급금 합계 3,2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최고하는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여 2018. 7. 2. 위 최고장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이 위 2018. 7. 2.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인 2018. 12.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법 제174조에 따라 제1지급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인바, 이를 지적하는 원고 A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 E는 1998. 8.경 원고 A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 A에 대하여 5,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채권을 가진다.

○ E는 원고 A에 대하여 D과 관련하여 은행차입금 1억 4,900만 원, 사채차입금 1억 7,850만 원
합계 3억 2,75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

○ E는 원고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2072 약정금 등 사건의 판결에 기한
26,404,868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L가 위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도
E가 양수하였다.

○ E는 원고 A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32979 대여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기한 3,6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36418호, 2020카합46422호 각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 합계 11,122,427원의 소송비용상환채권을 가진다.

○ 이에 E의 상속인인 피고는 위와 같은 채권들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A의 제1, 2, 3지급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계한다.

나) 5,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채권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13호증, 을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에 대한 5,000만 원 대여금 주장의 가장 주된 증거인 확인서(을1호증)에는 ‘대여’가 아니라
‘투자’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그 작성 명의인 겸 채무자도 원고 A이 아니라 M과 원고 B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 B와 E가 1999. 8. 1.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동업이행합의서(갑13호증)에는 E가 위
5,000만 원에 더하여 추가로 1억 원을 더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합의서의
작성 명의인에서 원고 A은 빠져 있는 점(따라서 원고 A을 대어나 투자 약정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설령 대여가 아니라 투자라고 하더라도 위 확인서에서 E가 원하는 시간으로부터 약 1월
이내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 A에 대하여 투자금 5,000만 원의 반환채권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을1, 7호증만으로는 피고가 1998. 8. 22.경
원고 A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합계 3억 2,750만 원 상당의 대여금 반환채권에 관한 판단

○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갑22호증, 을20, 5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가 원고 A에게 D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4. 2. 6.부터 2008. 6.

10.까지 사채차입금 합계 1억 7,85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E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5,100만 원(= 1억 7,850만 원×상속지분 2/7)의 대여금 반환채권을 가진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이 운영하던 D의 이 사건 월보에 2008. 6. 30. 기준 ‘차입금(사채)’이 1억 7,850만 원, ‘차입금(은행)’이 1억 4,900만 원, ‘차입금총액’이 3억 2,7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E가 원고들의 아들인 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2629호) 법원은 2013. 7. 4. 선고한 판결에서 E가 2004. 2. 6.부터 2008. 6. 10.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D의 자금관리계좌로 사용하던 E 또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월보에 2008. 6. 30. 당시 사채차입금으로 1억 7,850만 원이 기재되어있는 점 등을 근거로 E가 원고 A에 대하여 1억 7,850만 원의 대여금 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 나아가 피고가 가지는 위 대여금 반환채권의 이행기가 정해졌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위 대여금 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채권자가 언제라도 그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 성립과 동시에 변제기가 도래한다 할 것인바, 2008. 8. 14.에 원고 A의 제1지급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과, 2009. 6. 5.에 원고 A의 제2지급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과, 2009. 9. 30.에 원고 A의 제3지급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각각 상계적상에 놓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원고 A의 제1, 2, 3지급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피고의 위 대여금 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이 사건 20. 12. 27.자 준비서면 부분이 2021. 1. 8. 원고 A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A의 제1, 2, 3지급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위 각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피고의 위 대여금 반환채권은 관련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0나98180호)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그 이행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고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95조),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의 주장

○ 제1, 2, 3지급금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고, 원고 B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 B은 주위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제1, 2, 3지급금 합계 3,2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제2, 3지급금의 경우 부당이득을 얻은 자가 피고가 아니라 E라고 본다면, E의 상속인인 피고는 제2, 3지급금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바, 원고 B은 제2, 3지급금과 관련하여 예비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제2, 3지급금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2/7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B이 D의 사업자로 등록되었던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이 제1, 2, 3지급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위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용현